

## 해외건설 전문번역 지원사업 업무협약서

해외건설협회(이하 “협회”라고 한다)와 한국외국어대학교(이하 “한국외대”라고 한다)는 (이하 함께 지칭할 경우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 해외건설 전문번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해외건설에 대한 전문 외국어 번역 지원을 통해 중소·중견 해외건설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협약내용)

① “한국외대”는 “협회”의 요청에 따라 해외건설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입찰 제안요청서, 입찰 제안서, 기업소개서 등의 자료를 전문 번역하여 제공한다.

② “한국외대”에서 번역 제공하는 언어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다음과 같다.

가. 스페인어, 불어, 아랍어, 러시아어, 포르투갈어, 독어, 우즈베키스탄어, 히브리어, 몽골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미얀마어, 캄보디아어, 이탈리아어, 마인어(이상 15개어)

③ 전항의 언어 이외 외국어 번역을 요청할 경우 “한국외대”는 번역가를 섭외하는 등 번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제3조(선관 의무)

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4조(번역료의 지급)

- ① “협회”는 “한국외대”에 본 협약에 따른 번역의 대가로서 “한국외대”에서 공시한 번역료를 기준으로 계산 지급한다.
- ② “한국외대”는 “협회”에서 신청한 번역의 대가가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,000,000원이 초과하는 경우 협회와 번역료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사전에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내용(지원기업의 업무상 내용을 포함한다)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6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7조(특약사항)

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양 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.

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3월 31일

해외건설협회 회장 박 선 호 (인)

(업무취급)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장 신 동 우 (인)

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 정 운 (인)

(업무취급) 통번역센터장 곽 순 례 (인)